

인천 청라국제도시 A-4블록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12.17.]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청라동), 인천청라국제도시 A-4블록
 - **공급대상** : 84,9940㎡(84A), 84,9995㎡(84B), 84,9940㎡(84C) 분양주택 270세대
-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분양상담 전화(1544-4388),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적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나 입주자모집공고에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시, 적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독근거가 시행될 수 있으나,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인천 청라국제도시 A-4블록 시티프라디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건물주택을 대신하여 사이버 건물주택(http://인천청라시티프라디움.com)을 운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1544-4388)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지정된 기간 외에는 방문 불가 /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방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현장 및 분양사무소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점속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는 경우 /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세대 개발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재당첨 제한	거주유무기간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3년	8년

*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순으로 공급합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별표	계약체결
일정	2021.12.17	2021년 12월 27일(월)	2021년 12월 28일(화)	2021년 12월 29일(수)	2022년 01월 04일(화)	2022년 01월 17일(월) ~ 01월 20일(목)
방법	당사 홈페이지 등 기재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4일간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홈페이지 (http://인천청라시티프라디움.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신청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근린생활시설1분양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근린생활시설1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20678호(2021.12.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 (청라동), 인천청라국제도시 A-4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8층 6개동 총 2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8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7세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8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32세대 포함)]
- **대지면적** : 20,041.80㎡ (공동주택 : 18,796.19㎡, 근린생활시설 : 1,245.61㎡)
- **입주시기** : 2022년 03월 01일(화) ~ 2022년 04월 30일(토)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경제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0893	01 084.9940A	84A	84.9940	22,214.0	107,208.0	55,985.2	163,193.2	69,614.2	112	11	4	35	4	12	77	35	2	
		02 084.9995B	84B	84.9995	23,511.7	108,511.2	55,989.9	164,500.1	69,618.7	79	8	8	2	23	2	10	53	26	2
		03 084.9940C	84C	84.9940	22,812.6	107,806.6	55,985.2	163,791.8	69,614.2	79	8	8	2	23	2	10	53	26	2
합 계									270	27	27	8	81	8	32	183	87	6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계약시	입주자정일		
084.9940A	84A	112	631동 2.5호 632동 1.3호 633동 1호 634동 1호 635동 3호 636동 3호	1F	2	292,795,019	240,504,981	533,300,000	53,330,000	479,970,000		
				2F	8	292,795,019	247,504,981	540,300,000	54,030,000	486,270,000		
				3F	8	292,795,019	254,504,981	547,300,000	54,730,000	492,570,000		
				4F	8	292,795,019	261,504,981	554,300,000	55,430,000	498,870,000		
				5F 이상	78	292,795,019	268,504,981	561,300,000	56,130,000	505,170,000		
				최상층	8	292,795,019	306,954,981	599,750,000	59,975,000	539,775,000		
084.9995B	84B	79	631동 3호 632동 2호 633동 2호 634동 2호 635동 2호 636동 2호	1F	2	292,813,966	240,486,034	533,300,000	53,330,000	479,970,000		
				2F	6	292,813,966	247,486,034	540,300,000	54,030,000	486,270,000		
				3F	6	292,813,966	254,486,034	547,300,000	54,730,000	492,570,000		
				4F	6	292,813,966	261,486,034	554,300,000	55,430,000	498,870,000		
				5F 이상	53	292,813,966	268,486,034	561,300,000	56,130,000	505,170,000		
				최상층	6	292,813,966	306,936,034	599,750,000	59,975,000	539,775,000		
084.9940C	84C	79	631동 1호 632동 5호 633동 3호 634동 3호 635동 1호 636동 1호	1F	2	292,795,019	240,504,981	533,300,000	53,330,000	479,970,000		
				2F	6	292,795,019	247,504,981	540,300,000	54,030,000	486,270,000		
				3F	6	292,795,019	254,504,981	547,300,000	54,730,000	492,570,000		
				4F	6	292,795,019	261,504,981	554,300,000	55,430,000	498,870,000		
				5F 이상	53	292,795,019	268,504,981	561,300,000	56,130,000	505,170,000		
				최상층	6	292,795,019	306,954,981	599,750,000	59,975,000	539,775,000		

2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 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인 분. (단, 거주유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정기복무 재대교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법보훈복지과 - 10일 이상 장기복무 교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지원지원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성장지원팀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과
-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7세대**
- **대상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대상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추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6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중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추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추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추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나 소재 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근로자적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
 -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자속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 대한 3명 이상 인정자료도 포함됨
 - 태어나 양양한 자녀에 포함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자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 자료(임신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됨
 - 임신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 전 피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입양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고,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30% 범위) : 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자속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청·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자녀수 신청 시 제출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신청함.
 - 출산한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인 경우 임신신청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인 경우 임신신청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피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을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금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면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사유액(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사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의 배우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잔금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청·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자속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2%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17)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함
- 생애최초세대(태어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양육)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세월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정제외한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사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잔금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소청·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자속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자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청약순위를 별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50%를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함.**
-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 각 목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여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에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하나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 |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100% 적용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의 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채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 | 청약제한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위에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 2순위 | 전용면적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 | | 청약제한 대상자 | |

3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상품

- **발코니 및 플러스 옵션상품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공급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상품 시공이 완료되어 아파트 공용구역 체결과 동시에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상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된 한 상태 확인 후 일괄 계약체결을 하여야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 옵션상품 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엔데리코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 옵션상품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확인 기간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상품의 마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방배매관은 거실(스텐드형), 침실, 2.2(경첩이형)역자침에 설치 불가)에 설치 · 시공되어 있습니다.

4 사업주체 등 현황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시티건설이 2019.05.31.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2019.06.13 착공신고 처리되어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2021.07.23)를 받아 공급되는 주택입니다.